

2022년 4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5건, 422억 22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

○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: 부당이득금 362억 39백만원

- '09년 “유통업무설비 신축사업”의 실시계획인가시 서울시가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 협약 및 사용승낙을 받아 '13년 공사완료 하여, '23년 현재 공용 중에 있는 도로(8,675.25㎡)에 대해,

- '14년 사업시행자가 파산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 실효되었고, 해당 토지를 공매 취득한 원고가 서울시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(1심)에 대하여, 피고인 서울시가 일부 패소하였음.

※ '22.11.15. 항소, '23.1월 이후 2심 진행 중

- 1심 판결 이후 발생하는 이자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36,239백만원(판결금 35,374백만원 및 이자 865백만원)을 가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	계		36,238,571,040	
도로계획과	부당이득금 반환소송	배상금 등 (305)	36,238,571,040	'22.10.21.

○ **손실보상금 행정소송 : 보상금 35억 79백만원**

- 「금호로 확장공사」('16. 6.~'22. 6.)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시행 중 건물 보상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쳤으나, **보상금 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.**
- 1심에서 원고 건물의 보수비 산정이 이의재결 감정가액보다 3배이상 크게 증액되어 보수비 산정에 대해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항소하였고,
- 1심 판결 결과 발생하는 이자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3,579백만원 (판결금 2,780백만원, 이자 799백만원)을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3,579,426,000	
도로계획과	금호로 확장	배상금 등 (305)	3,579,426,000	'22.12. 5.

○ **손해배상 청구 소송 : 임료 상당 손해배상액 7억 34백만원**

- 시도(구천면로)로 활용 중인 강동구 천호동 417-2, 425-2 및 280-2 총 1,927㎡에 대하여 서울시가 **보상 없이 사건 토지들을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다**며 재판부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**손해배상 청구**를 인정하였음

【 판결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3213 손해배상
- ◆ 위 치 : 강동구 천호동 417-2(542㎡), 425-2(800㎡), 280-2(585㎡)
- ◆ 청구원인 : 상기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시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건 토지들을 시도(구천면로)로 사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
- ◆ 판결결과 : 1910년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전전 소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시취득을 인정하여 그 후손인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함
- ◆ 패소사유 :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 또는 무상 기부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공 문서 부재 및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을 반박할 증거 부재로 항소 포기하여 패소 확정됨

- 원고가 세금 등을 이유로 2022년 말까지 판결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, 지급 지연에 대한 연 12%까지의 이자 부담을 감하고자 예비비 734백만원 (판결금 547백만원, 이자 15백만원, 임료 172백만원)을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734,756,830	
도로계획과	미지급용지 보상	배상금 등 (305)	734,756,830	'22.12.28.

○ 공사대금 민사소송 : 추가공사비(간접비) 12억 11백만원

- 「천호대로(광나루역) 확장공사」('10.10.~'19.11.30.)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공사비(간접비)가 지급되지 않아 시공사에서 민사소송 제기함.
- '22. 11.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, 교통규제심의, 매장문화재발굴조사, 연차별 투자예산 조정 등 시공사 책임이 없고 공사대금도 서울시 자문회의 등 검증을 통해 금액 확정되었으므로, 시공사에서 요청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됨.
- 소송 장기화 시, 청구금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자 추가발생 우려로 화해권고 수용에 따라 예비비 1,211백만원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1,211,000,000	
도로계획과	천호대로(광나루역) 확장공사	시설비 (401-01)	1,211,000,000	'22.12.29.

○ 2022년 하반기 정기 임료 : 4억 58백만원

- 우리시는 시도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미보상 토지(112필지 16,288.63㎡)에 대하여 매년 상·하반기 임료를 지급해오고 있음.
- '22년 하반기 정기 임료로 한국농어촌공사 외 21건 대상, 약 6억 3915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본예산이 1억 8308만원밖에 남지 않아 부족액 4억 5856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게 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458,568,000	
도로계획과	도로편입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	시설비 (401-01)	458,568,000	'22.12.29.